

$$\begin{cases} \mu(\alpha) = \frac{\mu(h-d) + \mu(h+d)}{2} \\ \mu(\beta) = \frac{\mu(h-d) - \mu(h+d)}{2} \end{cases} \quad \text{라농면}$$

1	$L$			6	$\lambda(L)$
2	$h$	4	$h-d=a$	7	$\mu(h-d) = \mu(a)$
3	$d$	5	$h+d=b$	8	$\mu(h+d) = \mu(b)$
				9	$\mu(\beta) = \frac{\mu(a) - \mu(b)}{2}$
12	$\log \operatorname{ccosh} \mu(\alpha)$	13	$\log \sinh \mu(\alpha)$	10	$\mu(\alpha) = \frac{\mu(a) + \mu(b)}{2}$
14	$\log \cosh \{\mu(\beta) - \lambda(L)\}$	15	$\log \sinh \{\mu(\beta) - \lambda(L)\}$	11	$\mu(\beta) - \lambda(L)$
16	$\log \tanh \mu(A)$ =12-14	17	$\log \tanh \mu(B)$ =13-15	20	$z$
18	$A$	19	$B$	21	$t$

$$h > d : t = A, z = B, \quad h < d : t = B, z = A$$

$$\begin{cases} \log \tanh u(A) = \log \cosh \{u(\beta) - \lambda(L)\} - \log \cosh \mu(\alpha) \\ \log \tanh u(B) = \log \sinh \{u(\beta) - \lambda(L)\} - \log \sinh \mu(\alpha) \end{cases}$$

## 6. 結 論

지금까지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e^{u(\theta)} = \left| \cot \frac{\theta}{2} \right|$  즉  $u(\theta) = \log_e \left| \cot \frac{\theta}{2} \right|$ 인 函數를 定義하고
- ②  $\theta$ 의 円函數를  $\mu(\theta)$  및  $\lambda(\theta)$ 의 双曲線函數로 유도하고
- ③  $u(\theta)$ 의 双曲線函數를 利用해서 斜角球面三角形의 解法의 公式를 유도하고
- ④ 天文三角形에 對한 應用을 略述하였다.

$$\mu(\theta) = \log_e \left| \cot \frac{\theta}{2} \right| \quad \text{와} \quad \lambda(\theta) = \log_e \left| \cot \frac{1}{2} \left( \frac{\pi}{2} - \theta \right) \right| \quad \text{의 双曲線函數와 그 應用에 關하여}$$

$u(\theta) = \log_e \left| \cot \frac{\theta}{2} \right|$ 의 값, 또 이 값에 對한 双曲線函數表를 作成하면 斜角球面三角形 및 天文三角形의 풀이를 容易하게 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① 金相輪 球面三角法
- ② 韓國海洋大學 航海科要縮
- ③ G. B. Thomas 著 文源譯 微分積分과 解析幾何學

# 株式會社の 理事會에 對한 諸問題

全 乘 翼

## Problem concerning Board of Directors of Jointstock Corporation

### Abstract

It seems true that the development of capitalistic economy has made a great deal of variation in both the type and substance of Joint-stock corporation.

Nowdays, the higher standard of capitalistic economy and the separation between ownership and management has necessarily required mobility along with nationality on the side of those who run the business body.

On the demand of mobility and efficiency in the present business, Board of Directors has become to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organization of Joint-stock corporation.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 legal regulation for the system of Board of Directors and its operation have shown great focu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So in order to make more efficient operation of the system of Board of Directors, This essay will historically explain the consequent result that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appear, and preventing it from reducing itself incompetent, the substance of law and more efficient operation Board of Directors are to be discovered through explaining the problems found on the existing law from the view-point of the legislative theory.

### <目 次>

- |                        |              |
|------------------------|--------------|
| 1. 序 論                 | 法的 根據        |
| 2. 理事會制度의 本質           | ③ 理事의 員數와 決議 |
| 3. 新商法 理事會에 對한 諸問題     | ④ 理事의 兼任     |
| ① 理事의 任期               | 4. 結 論       |
| ② 理事會의 代表理事에 對한 業務監査權의 | 5. 參考文獻      |

### 1. 序 論

資本主義經濟의 發展이 株式會社인 企業의 形態 및 實質에 많은 變容을 招來하였다. 近代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經濟의 高度化가 株式會社企業의 中樞的 經營者層 即 管理機關에 機動的이고 効率的인 活動을 要請함에 따라 그의 構成 및 權限의 配分에 關한 再檢討가 近代株式會社의 法에 焦點이 되고 있다.

近代株式會社의 經營機構는 意思機關과 管理機關으로 分離하고, 意思機關은 會社資本의 形成에 參加한 사람들을 構成員으로 하는 最上級機關으로써 管理機關을 그 支配下의 下級機關으로

設定함이 어떠한 法系에 屬하는 株式會社일지라도 共通의인 現象이다. 換言하면 會社の 最高意思를 決定하는 機關으로써의 株主總會, 그 意思決定에 基因하여 會社業務를 執行하는 機關으로서의 理事, 執行機關인 理事의 業務執行과 會計事務를 監督하는 機關으로서의 監事等の 三權으로 分立하였다. 이것은 「레만」(Lehmann)의 所謂 三分說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沿革적으로 佛蘭西革命 當時의 立憲政治思想의 影響을 받아서 發展된 產物이라 하겠다. 그런데 管理機關의 構成은 各國의 社會的·經濟的 事情에 依하여 다르며 美國法은 管理機關을 執行機關과 監督機關을 分離하지 않고 있다.

新商法下에서는 從來의 大陸法에 屬하였던 機關體制에다 英美法上의 諸制度를 導入하여 그特色을 이루고 있는데 그 內容을 보면,

첫째로, 舊商法上의 株主總會는 株式會社の 最高萬能의 機關으로써 法令中의 強行規定이나, 定款規定에 違反되지 않는限 會社の 運營에 關한 모든 事項을 決定할 수 있었다. 그런데 新商法에 있어서는 株主總會는 商法 또는 定款에 規定된 事限에 限하여서만 決議할 수 있으며, (商361條) 其他의 事項은 理事會의 權限으로 옮겨졌다. (新株發行 社債發行)

둘째로 舊商法上의 理事는 各者가 單獨으로 會社の 機關을 構成하고 單獨으로 業務執行의 權限을 行使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理事會는 그 自體가 任意機關이었다. 新商法上에서는 理事의 權限을 擴大한 結果 그 權限의 濫用을 防止하며 그 權限을 慎重하고 適正하게 行使하기 위하여 理事全員으로 構成되는 會議體로서의 理事會制度를 法定化하였다. 그리고 理事에게는 單獨으로 業務執行을 할 수 없고 다만 理事會의 構成員일 뿐이다. 아울러 理事會는 議會體이므로 業務執行自體에는 不適當한 機關이다. 故로 理事會에서 決定된 事項을 執行하고 會社の 業務決定 및 그 實行을 擔當하며 外界에 對하여 會社를 代表하는 代表理事를 두었다. 代表理事는 理事會에서 選出되고, 理事會의 一構成員으로서의 理事의 地位를 거하고 있으므로 理事會에서 行하는 意思決定과 그 執行間의 關聯性을 맺을 수 있는 經營上의 利點이 있다.

셋째로 會社の 監督機關인 監사다. 舊商法上 監사가 業務全般에 對한 監督인 業務監査와 經營의 計數的表現인 會計監査權을 가졌으나, 新商法の 監사는 會計監査權만을 가지는데 不過하다.

이와같이 新商法이 株主總會의 權限을 축소하고, 監사의 權限을 會計監査權에 局限함에 따라 理事會의 權限을 확대하게 되었다. (商412條)

即 株主總會中心主義로 부터 理事會中心主義로 變化하였다. 이와 같은 現象은 資本主義經濟의 高度化 및 株式會社資本의 巨大化에 따른 株式分散의 現象이 發生한 때문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理事會에 強大한 權限을 부여한 것은 少數者의 支配에 依한 經營의 合理化를 위한 理論的 要請과 株主總會의 無能化 및 經濟發展에 따른 現實的 要請에 基因하였다. 그러나, 理事會制度의 運營에는 實際上 또는 法文上의 內在的 矛盾으로 그 運用이 阻害됨으로 本稿에서는 理事會制度의 本質을 論하고, 現行法上의 內在的 缺陷을 指摘하면서 立法論的 試圖를 促求하였다.

## 2. 理事會 制度의 本質

理事會란(Board of directors) 理事會全員으로 構成되는 法律上의 議會體로써 業務執行에 關한 會社の 意思를 決定하는 必要的 常設機關이다. 舊商法上에서는 勿論 理事會에 關한 直接的

인 規定이 없을 뿐만 아니라, 法律上의 會社의 機關도 아니었다. 다만 業務執行上의 協議 또는 意思의 決定을 하기 위하여 便宜上 定款에 依하여 任意的으로 設定된 議會體이다(舊商260條1項) 본來 英美에서 發達한 理事會 制度는 企業의 所有와 經營의 分離에 따른 現代 企業의 必然의인 要請으로서 西歐各國의 會社法上에 채택되고 日本의 改正商法이나, 우리 新商法上에서도 規定하게 되었다.

理事會制度를 沿革的으로 볼 때 英美의 株式會社도 大陸法系의 株式會社와 같이 和蘭의 東印度會社를 그 起源으로 하고, 있으며, 그 英美會社의 理事會도 亦是 Verwaltungsrat(相談役)로부터 發展한 것이다. 即 西紀 1963년에 更新된 特許狀으로 會社組織이 어느 정도 民主化 됨에 따라 和蘭會社의 東印度會社에 設定된 主要出者會(Hauptparticipiten)(혹은 大株主會)는 처음에는 理事의 選任 決算書類의 承認等은 물론이고, 理事의 業務執行의 監督 및 承認의 權限을 가졌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株主總會 兼 理事會(독일에서는 株主總會 兼 督查總會)의 任務를 遂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8世紀의 「自由와 平等」思想의 영향 아래 最高機關으로서의 株主總會가 생기고 株主들까지 이에 參加하게 되자, Hauptparticipiten은 理事의 常設의 顧問으로서 會社의 經營에 監督 및 承認의 權限을 가진 Verwaltungsrat(相談役)가 되었으니, 이는 물론 株主의 利益代表 機關이었다. 그 후 이것은 株主總會의 權限이 擴大됨에 따라 經營管理會(Verwaltungsrat)의 構成員은 總會에서 選出되며 業務執行에의 協力을 第1次的 任務 그 監督은 第2次的 任務로 하는 理事의 常設의 顧問으로서 依然히 存續했다. 그리고 이 Verwaltungsrat가 英美에 있어서는 會社의 重役과 合同하여 理事會(Board of directors)가 되고 독일에서는 監查役會(Aufsichtsrat)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英美에서는 當初부터 理事會가 執行機關과 監督機關의 統合體로써 두 가지 機能을 發揮하고 會社機關으로서 株主總會와 理事會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沿革的 原由가 大體로 理事會制度를 채택하게 된 契機가 되었고, 各國 株式會社制度 發達의 一般의 傾向이라 하겠으나, 美國法制下의 理事會制度의 채택에는 特殊한 要因이 介在하고 있다. 即 19世紀前半단 하드라도 各 株主들의 會社에 있어서의 地位는 매우 強固한 것이어서 그 地位는 거의 共同企業의인 것이었으며, 이와 相關的으로 理事의 權限은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모두 보잘 것 없는 形便이었다. 그러하던 것이 18世紀後半特히 南北戰爭以後 美國產業의 비약적 팽창과 巨大企業의 發展에 따라 株主總會의 權限이 축소되고 理事들의 排他的인 經營權限의 確立을 招來했던 것이다. 이러한 發展을 促進한 것은 一般人들이 經營者를 깊이 信賴하고, 自己들의 資本을 經營者에 信託함으로써 株主는 經營에 積極參與하려하지 않는 特殊한 投資心理의 作用이었음은 물론이다. 美國人들은 受托者의 倫理(信託關係에서)가 確立되어 있고, 法律的으로도 理事는 受托者의 地位를 가진다고 解釋되며, 理事의 權限行使 義務의 履行責任等은 이 地位를 基礎로 하여 把握되며 判例 學說도 同一한 立場을 取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重要한 것은 會社財產의 所有가 점점 넓게 分散됨에 따라 그 財產의 所有와 이에 對한 支配는 점점 同一人의 手中에 歸屬하는 일이 적다"는 會社企業發展의 必然의 倫理와 「能率的이고 經濟的인 會社企業의 經營은 支配를 少數人에 集中함으로써 促進된다」<sup>3)</sup>는 經營의 現實的 要請에 依하여 날로 株主의 支配權은 축소되고, 理事會의 權限은 擴大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大陸法系의 國家에 있어서는 結果的으로는 같지만 그 發生根據가 다르다. 독일의 경우를 본다면 英美의 理事會의 母體인 Verwaltungsrat로부터 Board of directors(理事會)가 아닌 Aufsichtsrat(監查總會)로 發展해 왔다. 그리고 이것은 近代의 民主政治思想과 結合하여 總會를 最高機關으로 監事와 理事를 定立시키고, 「견제와 조화」로써 株主의 保護와 會社의 經營의 合

理化를 立法論的으로 要求했던 독일舊商法 및 우리의 舊商法은 여기에 有來된 것이다. 그러나 大陸法系國家에 있어서는 企業의 發展에 따라 그 自體內에 構造的 變化, 即 企業이 大規模하고 大資本이 必要하게 되면 一般大衆의 投資가 促進되고 이른바 株式分散의 現象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株式分散은 또한 株主를 企業株主 및 投資株主로 變化시켰다. 이러한 企業發展이 從來의 自由主義經濟의 一機構으로써 株式會社理念을 統制主義的 經濟理念으로 修正하려는 精神에서 無責任하고, 無能力한 株主의 集合體인 株主總會의 權限을 축소하고, 이 代身에 責任과 能力 있는 理事의 權限을 增大하는 指導原理가 채용되었다. 即 1937年 독일株式法 第70條는 이原理를 明文化하였는데 本條 1項에서는 理事는 從來와 같이 株主總會의 下位에 있는 單純한 會社代表 및 業務執行의 機關이 아니고, 自己固有的 權限과 責任을 가지고 會社의 運營을 擔當할 指導者임을 明白히 하고 同條2項에서는 理事가 數人인 있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卓越한 한 사람을 擇하여 會社의 內部 및 外部의 全關係에 있어서 指導的 地位를 確立할 수 있게 되었다. 換言하면 本規定은 理事에게 會社指揮의 權限과 義務를 認定하고 있는 것이 그 骨子인데, 독일株式會社法의 精神이 나타난 것으로 重要한 意義를 가진다. 한편 從來에 있어서 定款에 依하여 業務執行爲를 監事에 委讓할 수 있게 함으로써 理事가 監事에 從屬되는 것을(獨商264條2項) 廢止하여 監督機關으로 限定하였다. (獨株式法第95條)

이와같은 改正에 對하여 보통 「나치스」政治原理인 指導者原理를 企業理論에의 導入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政治的 立場에서 본 說明에 不適當하고, 指導者原理의 導入이란 形式的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 이미 그 當時 독일의 企業體制와 經濟界의 現實이 그 構造上의 變革을 일어키고 理事의 地位強化를 要求하고 있었다는 것, 따라서 그러한 法的 規制는 어디까지나 독일의 經濟構造의 發達變化에 適應한 合理的 解決을 試圖한 것이라는 것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特히 大會社일수록 理事의 힘이 強大해서 大會社의 理事는 容易하게 再選되어 그 地位의 恒久化를 招來하고 드디어는 理事王國의 事態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大陸法系에 屬하는 諸國에 普遍的인 制度라 할 수 있겠으나, 佛蘭西에서도 支配的인 것이었으니, 1940年法 및 1943年法이 所謂 議會制의 原則을 採用하여 業務執行機關으로서의 理事會를 法定하고 責任 있는 首長으로써 社長制度를 創設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商法도 舊商法이 1867年 독일舊商法이 採用하였던 株主總會中心主義를 포기하고 理事會制度를 採用하여 理事會中心主義로 한 것은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理論上 大陸法制下에서도 株式會社 또는 企業의 發展過程에서 經營者集團(指導者原理) 으로서의 理事會制度를 確立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理論的인 要請은 英美制度를 導入하려는 戰後의 現實的인 要請과 結合하여 理事會制度의 採用이 必然的 結果가 되었다.

이상과 같이 大陸法系과 英美法系에서의 理事會制度를 採用한 沿革의 原由가 存在하지만, 보다 더 重要한 趣旨는 다음과 같은 消極 積極 兩面에서 效果를 거두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消極的인 效果란 業務執行機關의 權限濫用을 防止하는데 있다. 即 資調金達의 便宜를 確保하기 위하여 授權資本制度를 採擇하며 定款上 認定된 一定의 範圍內에서 株主總會의 決議를 하지 않고, 理事會가 新株를 發行할 수 있으며, 無額面株式 發行 경우(新商法의 規定은 없단) 社債를 發行할 수 있는 경우 등의 理事의 權限이 광범해질 때 株主總會, 監事의 權限은 축소되고 理事의 自由裁量의 餘地가 넓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強大한 權限의 行使를 理事 單獨人에 맡기지 않고, 英美法系에서와 같이 複數人의 議會體(Board)인 理事會에 맡겨 權限行使의 適正 慎重을 期하게 하고 나아가서 그 責任의 所在를 明確히 함에 있다.

둘째로 理事會制度的 積極的인 效果란 有能한 數人의 理事의 知能과 經驗과 힘을 總動員하여 結合함으로써 資本主義的 競爭場에서 絶對로 必要한 企業의 創意性과 經營의 機動性 및 効率性을 確保함에 있다. 企業이 大規模化하고 大資本이 必要하게 되면 一般大衆의 投資가 促進되고, 잇른바 株式分散의 現象(Disversion of Stock ownership)이 나타남에 따라 株主의 量的質的變化를 가져온다. 卽 株主의 數가 激增하는데 그치지 않고, 支配株主가 아닌 投資株主 投機株主로 性質上 變化를 가져왔다. 이들 株主의 大部分은 企業經營에 無關心하고, 事實上 參與할 能力도 없으며, 보다 많은 利益配當과 보다 有利한 株式賣買만을 바라는 局外者의 世位에 스스로 만족한다. 뿐만 아니라 株式分散이 認定되고 株式讓渡自由原則이 수반되고 있는 以上 株主가 一朝一夕에 變動하고 이로 인한 株主들의 會社事情에 對한 無知 無經驗한 狀態에 있고 보니 必然的으로 會社의 經營은 「專門的 經營者」(理事)에게 專屬되지 않을 수 없다.

### 3. 新商法上的 理事會에 對한 諸問題

新商法이 理事會制度를 採用함에는 理論的인 要請과 現實的인 要請의 結合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法自體의 內在的 矛盾 때문에 理事會制度的 本質에 違背되는 結果가 되므로 다음 몇가지 問題를 提起하고 立法論的 解決을 促求하는 바이다.

#### ① 理事의 任期

舊商法에서는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였다. (舊商法273條)

그러나 現行商法은 會社의 理事 및 監事와의 關係는 信任關係의 基礎우에 있으므로, 理事와 監事의 任期를 단축하여 改選의 時期를 빨리 함으로써, 株主總會의 信任을 묻는 機會를 많게 하기 위하여 理事는 2年 監事は 1年으로 定하였다. (新商385條409條)

그런데 會社는 監事に 있어서는 每年 또 理事에 있어서는 2年마다 改選을 하고, 이를 登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會社는 어떠한 때라도 株主總會의 決議로 不適當한 理事는 自由로 解任할 수 있으므로(新商法385條), 任期를 단축하여 改選의 機會를 많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理論上의 必要性도 없고, 오히려 改選에 수반되는 會社의 번잡한 節次나 登記費用을 節約하고 나아가서는 理事의 世位를 確固히 하며, 經營事務에 보다 安定的이고 永久性 있는 計劃樹立을 위하여는 任期를 延長하는 것이 會社의 利益을 위하여 適當하리라 믿는다. 이러한 理論은 現代의 福祉社會國家에 있어서 政府는 보다 安定的인 政策樹立을 위한 法制를 要求하고 있는 것과 同一하다. 또 理事와 監事의 任期를 다르게 한 것은 理論上 空論에 不週하다. 卽 理論上으로 보면 監督者와 被監督者를 同一任期를 함으로써 理事와 監事의 個人的感情의 融合으로 監督의 忠實을 期할 수 없다는 理由이나, 實際上一이나 法文上으로 任期를 다르게 하더라도 同一人이 再選되는 경우가 許多하다. 아울러 現行法上의 監事에는 事務監查權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個人的感情의 融合도 우려되지 않으므로 理事나 監事의 任期를 同一하게 하여도 無妨하다고 생각한다.

#### ② 理事會의 代表理事에 對한 業務監查權의 法的根據

理事會는 代表理事에 對한 監督權(監查權)이 있다고 하는 것은 一般論的으로 肯定하고 있다 그러나 그 理論的 根據에는 學說上 一致되는 것이 없다. 어떤 學說에 依하면 理事會는 業務執行에 關한 全權限을 가지고 그 意思決定을 할 뿐만 아니라, 執行行爲도 하는 것이나 理事會 自

體가 執行行爲를 함에는 當然히 理事會會員이 共同하여 行動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法은 實際의 便宜를 위하여 業務執行權限을 代表理事에게 委任한 것이다. 그러므로 代表理事의 業務執行權限은 理事會에서 有來한 것이고, 그의 世位는 本來的으로 理事會의 受任者 또는 代理人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理事會의 代表理事에 對한 監督權도 여기에서 有來한다고 한다. 그러나 法文上으로 이 學說의 妥當性의 根據는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否定하는 法文이 있다. 即「會社의 業務執行은 理事會에서 決議한다」, (新商 393條)라고 하며 理事會는 意思決定機關이지 執行機關이 아님을 明白히 하고, 執行機關인 代表理事會를 必要로 하고 있다. 아울러 「會社는 理事會의 決議로 會社를 代表할 理事를 選定해야 한다」(新商389)라고 하여 代表理事는 理事會의 機關이 아니고 그 自體 法上의 世位를 가진 會社의 機關이다. 또 理事會는 항상 活動狀態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業務執行 할 수 없는 것이다. 他的 學說에 依하면 業務執行에 關한 意思決定機關과 그 意思決定에 基因하여 具體的으로 執行하는 機關과의 分化를 認定하고 前者에는 理事會, 後者에는 代表理事를 두고, 理事會는 代表理事를 選任 할 수 있으므로(新商389條) 解任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一般으로 理事會는 代表理事에 命令監督할 수 있다. 即 이것은 監事의 業務監查權에 代身하는 理事會가 가진 業務監查權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現行法上에서는 後說이 前說보다 理論的으로 그 妥當性이 크다 하겠다.

### ③ 理事의 員數와 理事會의 決議

現行法上의 理事會는 理事會會員으로 構成된 合議體 또는 議會體의 機關으로서 業務遂行의 決定權을 가지고, 營業의 基本方針 또는 一般的인 營業政策을 決定한다. 代表理事는 理事會의 決定에 따라 이것의 具體化시키는 것이므로 代表理事의 執行行爲에 對하여 理事會는 報告를 要求할 수 있다. 即 理事會의 決議한 事項에 따라 會社의 業務가 運營되었는가의 與否를 不斷히 監視하고 만약 代表理事가 不適當 하면 解任할 수 있는 것이 監督權의 內容이라 하겠다. 그런데 理事會의 代表理事에 對한 監督權의 內容은 舊商法上 監事が 理事에 對한 業務監查權과 여러가지로 다르다. 即 從來의 監事의 業務監查權은 單獨的으로 行使할 수 있으나 理事會가 가진 業務監查權은 理事會라는 議會體(Meeting of Boardsdirectors)에 依하여 行使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業務執行에 對한 理事會의 決議는 定款으로써 決議의 要件을 加重하지 않는 限 理事全員の 過半數의 決議로 해야 한다(新商391條). 아울러 現行商法을 보면 「理事는 3人 以上이어야 한다」(新商383條)고 하여 最小限의 理事의 員數를 法文化하고 있다. 그런데 이 法文을 前提로 하여 具體的인 例에 依하여 檢討하여 보면, 만약 一部理事가 代表理事의 業務執行行爲에 關하여 報告를 要求하려고 하는 경우에 理事會의 過半數를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即 理事會의 員數가 3人이고, 그중 2名이 代表理事에 選任되었다면(新商389條) 2名의 代表理事는 利害關係人으로써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을(新商368) 뿐만 아니라, 그 議決權은 過半數算定의 基礎가 되는 議決權에 算入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矛盾으로 代表理事가 理事會의 業務執行에 關한 事項을 無視한 行動을 하더라도 設例와 같은 경우는 理事會의 業務監查權은 그 行使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代表理事의 問責의 唯一한 方法인 解任도 할 수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現行法이 意思機關으로서의 理事會의 構成員인 地位와 執行機關인 代表理事의 世位를 無條件兼任하게 하여 理事會制度의 根本의 意義를 沒却한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立法論的으로 代表理事와 理事會의 構成員인 一部理事와의 構成比率를 法文化하여 理事會를 構成한다면 理事會라는 議會體의 本質을 保障할 수 있는 結果가 될 것이다.

## ④ 理事의 兼任

現行商法下에 있어서는 理事의 構成員은 大部分은 內部理事이고, 또 理事가 經理部長이라는 營業部長을 兼하고 있다. 通說의 見解에 依하면 이때의 理事의 地位는 理事會의 構成員으로서의 地位나 商業使用人의 地位를 兼任하고 있으므로 理事會의 構成員으로서의 地位에 있어서는 代表理事를 監督 또는 支配할 수 있고, 他面 商業使用人으로서의 會社業務를 執行함에 있어서는 代表理事의 指揮命令에 服從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例는 極斷的인 現象이 될지 모르겠지만 現行法上 可能的 것이므로 전혀 그 例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以上과 같은 通說的見解에 依한다고 하면 어떻게 商業使用人의 地位에 있는 者가 代表 理事와 同等한 資格에서 理事會의 構成員으로서의 理事의 權限과 機能을 發揮할 수 있을 것이며, 또 理事의 地位에 있는 者가(代表理事와 同等한 資格) 商業使用人으로서의 代表理事와 指揮命令에 服從하리라 期待하겠는가 現行商法上 理事會制度는 이러한 矛盾과 缺陷을 內包하고 있음을 否定할 수 없다. 그러나 法의 本質이나 時代의 變化에 따라 理事會制度는 株主總會의 無能化에서 오는 執行機關의 獨自의 地位의 確立과 그 權限의 強化를 招來하게 되었다. 換言하면 企業經營에 있어서의 經濟的인 힘이 結局은 少數의 經營擔當者에게 集中하게 되었다. 이러한 必然的인 結果에 對한 法的表現이 곧 數人의 理事로 構成되는 理事會를 法定機關化하고 強大한 權限을 歸屬하게 하였다. 그러나 理事會의 權限이 아무리 強大하더라도 民主主義運營에 阻害되거나 理事會의 專斷에 依한 株主의 不利益한 結果를 招來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議會體機關으로서의 理事會의 本質에 充實한 結果를 맺기 위하여는 監事가 支配人 其他 使用人을 兼할 수 없는 바와 같이(新商411條) 理事에게도 兼任禁止에 對한 規定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理事會의 構成員으로서의 理事의 職務執行을 保證하기 爲한 方法이라 하겠다.

## 4. 結 論

理事會制度는 現代企業이 지닌 機動性과 合理性의 要請과 함께 (行政權 強化를 指向하는 文化主義 國家의) 株式會社의 機構에 絶對的인 位置를 占하고 있다. 마치 現代民主 國家에 있어서의 行政權의 強化傾向과 같이 業務執行機關으로서의 理事會는 株式會社運營上에 大權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總會를 最高機關으로 監事와 理事와 理事會를 묶으로써 견제와 調和로써 株主의 保護와 會社의 適正한 運營을 꾀하는 資本的株式會社에 있어서의 素朴한 民主主義는 이미 낡은 原理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法과 社會的, 經濟的, 現實과의 乖離를 除去하려는 賢名한 努力의 表現이기도 하다. 어쨌든 株主總會의 中心主義는 한갓 必要한形式으로 存在할 것으로 修正되고 그에 代替된 理事會 中心主義가 世界各國의 株式會社法上의 基本原則이 되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대 보면, 各國의 理事制度의 機能 및 成果에는 疑問의 餘地가 없지 않다. 물론 各國의 法的傳統과 現實的 要請에 따라서 相異한 것이 오히려 當然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대體로 보와 理論上이나, 實際적으로 理事會의 權限은 實質的으로 業務執行自體를 實行하는 代表理事에 依하여 侵蝕당하고 있고, 業務執行의 遂行으로 부터 一步後退의 傾向이었다. 마치 株主總會가 會社運營의 必要한 形式으로 存在하듯이 理事會自體도 無能化되고 있다 따라서 理事會制度를 効果的으로 運營하기 위하여는 意思決定機關의 面에서나 執行機關의 面에서 檢討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兩機能의 關係를 明確히 함이 要請된다.

따라서 本稿에서 理事會制度가 나타난 必然的인 結果를 沿革的으로 說明하면서 理事會制度의



本質을 找았으며 나아가서는 理事會制度의 無能化에 對한 機能을 防止하기 爲하여 理事會와 代表理事에 對한 監督權의 根據를 明白히 하고 그 內容 및 行使方法을 明文化하여 解釋上 異義를 一掃하고 다음에 理事會의 構成員인 代表理事의 構成比率을 法文化할 것을 試圖하였다. 아울러 理事의 任期에 對한 것과 理事가 商業使用人인 地位를 兼하는 慣行은 現行商法의 管理機關體制가 舊商法上의 管理機關體制와는 理念上이나, 法形式上 相異한 것이므로 監事가 支配人 其他의 使用人을 兼할 수 없는 바와 같이 理事에게도 兼任을 禁止할 것 등을 立法論으로 解決을 促求했다. 이 以外에도 理事會의 運營을 爲하여 證券市場의 發展稅制의 根本的 改革, 計理士制度의 質的量的上이 要求되는 바이다.

## 5. 參考文獻

- ① 大隅健一郎 株式會社法 變遷論 31面, 231面
- ② Berle and Means. : 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1957) p69
- ③ Stevens: Handbook of the law of Corporation (1949) p949
- ④ 徐燦珪 商法 105面
- ⑤ 石井照久 企業形態論 146面
- ⑥ 徐燦珪 前掲書 109面
- ⑦ 株式會社法の改正の基本問題 497面
- ⑧ 大隅健一郎 商法(上) 76面 徐燦珪 株式會社法基本問題 554—56面
- ⑨ 株式會社の改正の基本問題 498面



# 體育의 場所에 따른 分類와 그 重要性에 關하여

崔 普 烈

<目 次>	
序 論	3. 社會體育
1. 家庭體育	4. 軍隊體育
2. 學校體育	結 論

## 序 論

인간은 전생활의 半을 家庭에서 보내는데 特히 體位向上에 유의함으로써 健康한 國民의 指標가 함양된다는 것은 東西古今의 眞理이다. 그러므로 家庭體育의 健全한 發展을 俾하려면 行政當局은 먼저 家庭으로 부터 침투하여 社會의 氣風을 造成하여야 할 것이다.

全人의 人格形成을 目標로 하는 學校 體育에서는 教育의 必須不可缺한 體育을 等한시하는 경향에 排除하고, 指導者 不足과 運營의 妙를 期하여야 하며, 選手養成의 위주의 學校 體育이 아니라 全體學生의 體育運動을 할 수 있는 制度와 여건이 조성되어야 겠으며 社會 體育은 學校 體育의 바톤을 받아 이룩되는 一連의 과정에서 보면 學校 體育이 重點的으로 취급되어야 함은 두 말할나위도 없다.

社會의 各機關이나 工場 企業體는 국가의 強力한 體育行政이 뒷받침하면, 社會體育振興이 크게 興성할 時點에 있다. 軍隊體育은 國家와 民族의 방패로서 軍은 말은바 使命을 다하려면 強力한 體力과 國內外 情勢에 비친 軍隊體育의 動向과 國家의 安保와 國民의 平和를 유지 보존하 리면 軍體育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 1. 家庭體育

### 1) 家庭體育의 重要性

國家의 最少單位는 家庭이며 家庭을 바탕으로 하여 社會와 國家가 形成된다. 家庭이 健康대 양 社會가 健康해 진다는 말이 있다. 그 만큼 家庭의 健康이 자치하고 있는 比重은 큰 것이다. 그리고 母體의 健康은 子女의 健康과 直結되고, 子女들의 健康은 國家와 社會가 要求하는 人間 像으로 發展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은 第2次大戰 敗戰後 「國力은 母體에서」라는 슬로간을 내걸 고 女性體育運動을 獎勵하여 오늘의 世界強國으로 登場하게 된 要因의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는 家庭體育의 重要性을 認識하여 家庭體育의 積極的인 獎勵와 社會氣風의 造成을 위하여 該問 題點과 새 方向을 研究하지 않으면 안된다.

### 2) 家庭體育의 方向

家庭은 社會와 國家와 共同體이다. 우리 나라는 자기의 職務에서 벗어나 여가 시간(Leisure